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17호 2014. 3. 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4-20호 신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87호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6
- 정선군 공고 제2014-112호 2014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39
- 정선군 공고 제2014-131호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41
- 정선군 공고 제2014-147호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87
- 정선군 공고 제2014-149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00
- 정선군 공고 제2014-150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10
- 정선군 공고 제2014-1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 120
- 정선군보건소 공고 제 2014-4 호 정선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2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4-20호

신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와 “농림수산사업지침서”에 의한 신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신동읍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 창출 및 농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일원 A=119.82km²

○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확충 : 안경다리 주민상생교류센터구성(A=369m²), 공용주차장구성(A=1,082m²), 지역장터구성(A=5,824.8m²)
- 지역경관개선 : 중심가로정비(L=1,230m), 조룡송이산소길정비(L=1,500m), 조룡송이광장구성(A=2,760m²), 신동입구공원구성(A=496m²), 예미주민쉼터구성(A=271m²), 의림체육공원정비(1개소),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등 1식

4. 사업비 : 10,0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4. 2. ~ 2015. 12.

6. 사업효과

- 신동읍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지역주민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9.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33-560-2464, 246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 안경다리 주민상생교류센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83	483	
1	조동리	3-22	대	76	76	김광형
2	"	3-20	대	273	273	엄은희
3	"	3-21	대	20	20	김광형
4	"	3-37	대	12	12	이형만
5	"	3-18	대	69	69	김정애
6	"	3-17	대	33	33	김정애

□ 공용주차장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613	1,384	
1	조동리	14-8	대	143	27	정선군
2	"	14-7	대	1,056	39	정선군
3	"	12-9	대	105	99	신옥례
4	"	12-14	대	122	110	정선군
5	"	12-19	대	137	128	신현배
6	"	12-26	대	93	88	김명하
7	"	12-27	대	86	79	신정자
8	"	12-34	대	88	79	최우성
9	"	12-35	대	85	75	함천석
10	"	12-94	대	135	97	정선군
11	"	12-95	대	26	26	정선군
12	"	12-86	대	50	50	정선군
13	"	12-96	대	91	91	정선군
14	"	12-97	대	59	59	정선군
15	"	12-98	대	14	14	신정자
16	"	12-89	대	39	39	홍성예
17	"	12-99	대	54	54	정선군
18	"	12-100	대	13	13	정선군
19	"	12-91	대	40	40	정선군
20	"	14-42	대	177	177	-

□ 지역장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95,806	7,417	
1	예미리	695-9	도	5,235	596	국(건설부)
2	"	695	답	2,558	2,558	박수봉
3	"	695-2	대	486	449	예미농업협동조합
4	"	695-16	구	50	50	예미농업협동조합
5	"	714-3	대	4,156	41	예미농업협동조합
6	"	715	묘	810	782	이영연
7	"	716-4	대	293	293	이영연
8	"	695-1	구	485	133	국(재무부)
9	"	718-6	대	932	746	정선군
10	"	718-44	차	216	199	정선군
11	"	718-5	대	322	322	강성일
12	"	718-41	도	114	91	정선군
13	"	717-4	전	244	212	정선군
14	"	718-2	도	20	12	정선군
15	"	717-1	도	53	6	국(건설부)
16	"	720-1	도	972	18	국(건설부)
17	"	718-40	잡	91	91	국(건설부)
18	"	718-7	대	496	43	이재현
19	"	695-10	답	34	8	예미농업협동조합
20	"	818-1	도	455	66	국(국토교통부)
21	"	695-8	대	46	46	예미농업협동조합
22	"	892-6	전	1,186	526	국(정선군)
23	"	892	천	76,552	129	국(건설부)

□ 조롱송이산소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17	195	
1	예미리	168-14	대	57	27	정선군
2	"	168-13	대	63	53	김창열
3	"	169-3	대	10	1	정선군
4	"	168-11	전	189	93	정선군
5	"	산50-5	도	198	21	정선군

□ 조릉송이 광장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0,506	5,489	
1	조동리	산54-25	임	880	843	정선군
2	"	산54-26	도	594	397	정선군
3	"	산54-27	임	362	59	정선군
4	"	11-6	도	174	153	국(건설부)
5	"	14-26	대	262	243	정선군
6	"	14-15	대	124	110	정선군
7	"	14-23	대	455	455	정선군
8	"	4-42	도	85	17	국(기획재정부)
9	"	14-35	대	722	142	정선군
10	"	14-33	대	507	445	정선군
11	"	4-1	도	1,653	111	국(기획재정부)
12	"	17-16	대	2,064	1,291	정선군
13	"	494-5	천	21,113	906	정선군
14	"	494-33	천	261	213	정선군
15	"	17-17	대	1,202	90	정선군
16	"	4-41	도	17	5	기획재정부
17	"	4-36	대	31	9	정선군

□ 신동입구공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6,639	539	
1	예미리	755-4	답	992	8	엄주용
2	"	755-8	도	53	49	국(건설부)
3	"	737-27	도	92	52	국(건설부)
4	"	737-16	도	1,454	20	국(건설교통부)
5	"	737-29	대	4,048	410	(주)KT

□ 예미리 주민센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총편입면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866	399	
1	예미리	673-3	대	373	42	정선군
2	"	656-15	대	22	22	국(기획재정부)
3	"	682-6	대	249	249	은완수
4	"	673-1	전	587	4	국(기획재정부)
5	"	656-14	도	3	3	국(국토교통부)
6	"	656-13	대	15	3	정선군
7	"	682-4	대	617	76	정선군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87호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 1. 공고기간 : 2014. 2. 25. ~ 2014. 3. 10. (14일간)
- 2. 사업명 :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3. 사업기간 : 2012. 10. 11. ~ 2014. 3. 31. (완료일 : 2014. 2. 24.)
- 4. 토지소재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340번지 일원
- 5.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 『붙임 1』
- 6. 조정금 조서 : 『붙임 2』
- 7. 관계서류의 열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 나. 열람기간 : 2014. 2. 25. ~ 3. 10.
 - 다. 열람장소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붙임 1.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1부.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조서 1부. 끝.

■[별지제4호서식]

화 암 면 건 천 지 구 지 적 확 정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종 전 토 지			확 정 된 토 지					소 유 자		비 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번	지목	면적 (m ²)	증가한 면적 (m ²)	감소한 면적 (m ²)	주 소	성 명		
1	정선	화암	건천	314	전	1,504	314	전	1,774.9	270.9		충북 제원군 청풍면 사오리 107	고*복		
				338	전	4,912	338	전	4,417.8		494.2				
				374	전	2,301	374	전	2,546.9	245.9					
2	정선	화암	건천	318-1	임	9,798	318-1	임	9,798.0			정선군 동면 화암리 204	구*회		
3	정선	화암	건천	245	전	248	245	전	2,025.7	1,777.7		강원도 정선군 동면 건천리 250	김*성		
				246	전	5,854	246	전	2,938.4		2,915.6				
				249	전	7,266	249	전	1,850.4		5,415.6				
							249-1	전	990.1	990.1					별필
				250	대	926	250	대	926.0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254	임	1,990	254	임	1,990.2	0.2				
				255-1	대	496	255-1	대	495.9			0.1		
				255-2	전	11,084	255-2	전	11,190.5	106.5				
				257	임	2,423	257	임	2,423.0					
				257-1	전	36,134	257-1	전	44,703.5	8,569.5				
				258-2	전	932	258-2	전	275.8			656.2		
				349	임	1,431	349	임	1,998.5	567.5				
				361	임	44,440	361	임	21,458.6			22,981.4		
			361-2				임	3,327.6	3,327.6			별필		
			361-3				임	11,100.8	11,100.8			별필		
			361-4				임	7,456.2	7,456.2			별필		
			산42	임	14,063	256-1	임	15,733.4	1,670.4					
						255-3	임	1,057.6	1,057.6			별필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산42-2	임	19,350	349-1	임	26,628.1	7,278.1			
4	정선	화암	건천	266	전	116	266	전	458.1	342.1	강원도 정선군 동면 건천리 250	김*정	
				269	전	10,807	269	전	9,516.4	1,290.6			
				270	대	288	270	대	287.9	0.1			
5	정선	화암	건천	316	임	2,688	316	임	2,085.3	602.7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70 0 두진아파트101-917	김*정	
				320	임	6,079	320	임	6,427.5	348.5			
				320-1	임	7,818	320-1	임	8,075.0	257.0			
				326-2	임	3,927	326-2	임	3,927.1	0.1			
6	정선	화암	건천	376	임	5,954	376	임	5,954.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2 교수아파트 1-504	김*희	
7	정선	화암	건천	344	임	6,463	344	임	6,463.0		정선군임계면골지리92 강원도삼척시교동757 교동청솔2차아파트201- 1104	김*수 김*수	지분 900/195 5 지분 1055/19 55
8	정선	화암	건천	326-3	임	1,974	326-3	임	1,974.0		서울강남구압구정동464 현대아파트63-608	김*욱	

9	정선	화암	건천	357	임	5,765	357	임	5,765.0			정선군 동면 건천리 499	김*배	
10	정선	화암	건천	374-1	임	7,203	374-1	임	5,358.1		1,844.9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기은리598-3 엘지사원아파트104-21 7	김*진	별필
							374-2	임	1,845.0	1,845.0				
11	정선	화암	건천	261	전	1,970	261	전	1,760.1		209.9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6-10	김*범	
				265	대	833	265	대	650.4		182.6	정선군 동면 건천리 221		
				311-1	임	10,691	311-1	임	10,346. 1		344.9			
				312	전	1,785	312	전	1,990.1	205.1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1길 47		
				332	전	10,658	332	전	11,280. 2	622.2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6-10		
				337	전	1,177	337	전	1,177.4	0.4		정선군 동면 건천리 122		
12	정선	화암	건천	325	전	19,231	325	전	19,124. 5		106.5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99-11 뉴서울1차10-401	김*자	
				325-3	임	9,949	325-3	임	10,040. 0	91.0				
13	정선	화암	건천	242	전	664	242	전	664.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43	김*근	
14	정선	화암	건천	364-1	전	22,306	364-1	전	23,412. 5	1,106.5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486-1	라*복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산73	임	1,440	364-3	임	1,440.0					
				산73-2	임	3,432	364-4	임	3,432.0					
15	정선	화암	건천	350	임	4,208	350	임	4,208.0			경기 이천시 단월동 97-2	문*옥	
16	정선	화암	건천	340	임	4,479	340	임	4,479.0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복수로183, 103동1504호 (롯데캐슬아파트)	김*문	
				340-1	임	3,947	340-1	임	3,947.1	0.1				
				347	임	6,304	347	임	6,304.1	0.1				
17	정선	화암	건천	372-1	전	33,289	372-1	전	8,767.0		24,522.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9길 7	박*혜	
							372-3	전	20,175.3	20,175.3				별필
							372-4	전	3,059.4	3,059.4				별필
	372-2	전	30,737	372-2	전	27,102.1		3,634.9						
				372-5	전	5,186.0	5,186.0		별필					
정선	화암	건천	372-2	전										
18	정선	화암	건천	240-1	전	13,950	240-1	전	13,950.6	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65-10	박*순	
19	정선	화암	건천	산70	임	793	372-7	임	793.0			서울 강동구 천호동 197-22-101	박*오	

20	정선	화암	건천	329	임	2,007	329	임	2,007.0			정선군 동면 461 건천리	서*란	
				329-1	임	2,512	329-1	임	2,512.0					
21	정선	화암	건천	260	전	14,377	260	전	13,394.1		982.9	정선군사북읍사북리381-4 동원탄좌복지아파트5-304	서*용	
							260-1	전	398.6	398.6	별필			
							260-2	전	96.6	96.6	별필			
							260-3	전	259.2	259.2	별필			
							260-4	전	57.2	57.2	별필			
				343	전	13,574	343	전	13,716.6	142.6				
				344-1	임	905	344-1	임	1,330.0	425.0				
22	정선	화암	건천	339	임	13,660	339	임	12,362.1	1,297.9	정선군사북읍사북리381-4 동원탄좌복지아파트5-304 정선군동면건천리302	서*용 이*영	지분 1/2 지분 1/2	
23	정선	화암	건천	240-2	전	2,162	240-2	전	2,162.1	0.1	정선군 동면 건천리 283	성*록		
24	정선	화암	건천	321	전		321	전	1,656.3	0.3	인청광역시부평구부평동	송*숙		

						1,656								
				321-1	전	6,203	321-1	전	6,273.4	70.4		767-110 엘지맨션2-301		
				321-3	임	360	321-3	임	360.4	0.4				
				321-4	임	1,683	321-4	임	1,683.4	0.4				
				321-5	임	392	321-5	임	392.6	0.6				
25	정선	화암	건천	299	전	10,377	299	전	10,633.0	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178	안*기	
				314-1	임	8,737	314-1	임	7,929.5		807.5			
26	정선	화암	건천	산24	임	2,876	338-1	임	1,814.2		1,061.8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325	안*모	
27	정선	화암	건천	283	전	416	283	전	3,093.7	1,649.7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4	안*모	합병
				284	전	1,028								
				286	전	3,174	286	전	1,791.4		1,382.6			
				289	전	1,967	289	전	1,690.6		276.4			
				290	대	218	290	대	218.0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28	정선	화암	건천	298	전	11,580	298	전	11,442. 3		137.7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4번길 7, 2층동(송의동)	양*자	
29	정선	화암	건천	296-2	임	4,932	296-2	임	4,932.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영통동963-2 신나무실쌍용아파트541 -502 서울송파구오금동44 현대아파트41-606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영덕동916 영통빌리지104-205		지분845 /4932 2255/49 32 1832/49 32
				297	임	4,506	297	임	4,506.0				지분 772/450 6 2060/45 06	
				297-1	임	3,461	297-1	임	3,461.0				오*만 이*덕 신*준 지분 593/346 1 1582/34 61 1286/34 61	
				319	임	2,522	319	임	2,522.0				지분 347/202 2 924/202 2 751/202 2	
30	정선	화암	건천	294-1	전	16,291	294-1	전	7,606.2		8,684.8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유*근	

							294-2	전	8,245.3	8,245.3		415-71		별필		
							294-3	전	440.0	440.0				별필		
31	정선	화암	건천	312-1	전	5,752	312-1	전	5,804.4	52.4		경기도안산시고잔동672 주공아파트903-206	윤*복			
32	정선	화암	건천	371	전	654	371	전	654.1	0.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이*환			
				372	전	648	372	전	648.1	0.1						
33	정선	화암	건천	247	전	1,051	247	전	1,784.2	389.2		정선군 동면 건천리 302	이*영	합병		
				248	전	344										
				301	대	378	301	대	454.6	76.6						
				302	대	407	302	대	407.0							
				301-1	전	4,012	301-1	전	1,693.9		2,318.1	정선군 동면 건천리 301				
							301-2	전	1,749.5	1,749.5						
				303	전	463	303	전	739.1	276.1						

				307	전	298	307	전	298.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81	
				308	임	11,045	308	임	10,752.5		292.5		
				318	전	13,544	318	전	13,941.5	397.5			
				335	전	6,003	335	전	6,183.2	180.2		정선군 동면 건천리 302	
				339-1	임	24,344	339-1	임	22,461.4		1,882.6		
							339-2	임	3,452.4	3,452.4			
				341	임	7,279	341	임	4,740.0		2,539.0		
							341-1	임	1,730.9	1,730.9			
				342	임	1,021	342	임	902.3		118.7		
				34	정선	화암	건천	312-2	전	6,387	312-2	전	
312-3	전	1,812.0	1,812.0										
315	임	9,061	315					임	9,061.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78	
328	임	8,664	328					임	8,664			정선군 동면 건천리 279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35	정선	화암	건천	334	전	5,504	334	전	4,986.0		518.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90	이*진
				373	전	2,221	373	전	2,728.0	507.0			
				328	임	8,664	328	임	8,664				
				240	임	2,241	240	임	2,240.0		1.0		
				285	임	3,180	285	임	2,338.0		842.0		
				300-1	전	6,367	300-1	전	5,133.8		1,233.2		
							300-3	전	1,870.3	1,870.3			
				300-2	전	248	300-2	전	248.0				
				304	전	182	304	전	182.0				
				306-1	전	6,580	306-1	전	6,055.6		524.4		
305	대	450	305	대	450.3	0.3							
306	대	660	306	대	660.3	0.3							
309	전		309	전	219.9	14.9							

						205							
				317	임	4,046	317	임	3,437.2		608.8		
				323	임	3,580	323	임	3,580.0				
				324	임	972	324	임	972.0				
				325-2	임	929	325-2	임	2,375.0	1,446.0		정선군 동면 건천리 306	
36	정선	화암	건천	360	전	5,630	360	전	5,630.2	0.2		정선군사북읍사북리302 사북선명아파트103-11 02	이*녀
				360-1	전	6,312	360-1	전	7,268.3	956.3			
				361-1	전	6,347	361-1	전	5,390.0		957.0		
				362	전	4,731	362	전	4,731.2	0.2			
37	정선	화암	건천	354	임	34,417	354	임	15,730. 0		18,687. 0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 리229-3 보은아파트3-106	이*희
				354-1	전	4,241	354-1	전	20,453. 2	16,212. 2			
				358	임	2,754	358	임	2,753.9		0.1		
				358-1	전	4,664	358-1	전	7,139.0	2,475.0			
				438	전		438	전	4,486.1	0.1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3,422							리229-3 보은아파트3-106		
				439	전	1,064									
38	정선	화암	건천	233	전	245	233	전	476.2	231.2			정선군 동면 건천리 82	이*극	
				234	대	175	234	대	258.5	83.5					
				235	전	912	235	전	1,487.5	575.5					
				256	전	3,616	256	전	3,127.5		488.5	정선군 동면 건천리 263			
				259	전	6,780	259	전	5,177.0		1,603.0				
				262	전	5,226	262	전	3,628.2		1,597.8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0			
				263	대	529	263	대	529.4	0.4		정선군 동면 건천리 263			
				264	전	6,691	264	전	6,691.4	0.4					
				322	임	15,438	322	임	13,787. 2		1,650.8				
							322-1	임	1,012.6	1,012.6					
328-1	전	1,983	328-1	전	1,883.1		99.9								

				331	전	6,007	331	전	6,096.0	89.0					
				331-2	전	2,205	331-2	전	2,205.0						
				365	전	10,952	365	전	12,976.6	2,024.6					
				365-1	전	1,073	365-1	전	1,342.0	269.0		정선군 동면 건천리 82			
				365-2	임	253	365-2	임	274.7	21.7					
39	정선	화암	건천	353	전	8,367	353	전	8,367.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63	이*남		
				353-1	임	2,212	353-1	임	5,700.5	3,488.5					
				353-2	임	4,552	353-2	임	1,685.0		2,867.0				
				359	전	15,268	359	전	15,268.3	0.3					
				359-1	임	144	359-1	임	144.0						
40	정선	화암	건천	258	전	3,140	258	전	2,860.9		279.1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292	이*봉		
				292	대	367	292	대	367.4	0.4					
				293	전	1,183	293	전	1,194.5	11.5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295	전	4,251	295	전	4,251.1	0.1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3-20			
				295-1	임	14,020	295-1	임	14,346. 3	326.3					
				296-1	임	4,274	296-1	임	2,542.8		1,731.2			경기도 군포시 당동 836-17	별필
							296-3	임	1,731.0	1,731.0					
				352	전	6,324	352	전	8,938.0	2,614.0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292	
				352-1	전	4,235	352-1	전	1,624.9		2,610.1				
41	정선	화암	건천	278	전	5,425	278	전	6,010.0			정선군 동면 건천리 292	이*봉	합병	
				279	전	585									
				280	전	1,914	280	전	1,645.5		268.5				
				282	임	1,025	282	임	1,189.2	164.2					
				287	전	6,816	287	전	7,172.5	356.5					
				288	전	407	288	전	407.1	0.1					
				291	전		291	전	318.4	34.4					

					284										
				330	임	2,063	330	임	907.3		1,155.7				
							330-2	임	1,155.8	1,155.8			별필		
				331-1	전	1,838	331-1	전	1,838.0						
42	정선	화암	건천	271	전	251	271	전	362.9	111.9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950	전*탁		
				272	대	532	272	대	532.1	0.1					
				276	전	1,868	276	전	1,460.0		408.0				
				277	전	400	277	전	400.4	0.4					
43	정선	화암	건천	산8	임	30,248	293-1	임	30,248.0			경북 상주군 화동면 평산리 363	전*군		
				산12	임	7,736	286-1	임	7,736.0						
44	정선	화암	건천	327	임	9,312	327	임	9,312.0			정선군정선읍북실리772-2 정선북실아파트102-307	정*영		
45	정선	화암	건천	산7-1	임	124,364	240-4	임	124,077.0		287.0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388	정선 전씨 석릉군 과 건천중 중회		
							240-3	임	286.9	286.9					별필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46	정선	화암	건천	294	임	3,322	294	임	3,322.1	0.1		원주시개운동328-1 원흥3차아파트303-320	한*희		
47	정선	화암	건천	258-1	임	5,669	258-1	임	5,669.3	0.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93	함*남		
48	정선	화암	건천	산50	임	5,950	363-2	임	5,95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963	함*석		
							365-3	임	27,291. 1		33,501. 9				
				산51	임	60,793	517	임	33,501. 4	33,501. 4					별필
							365-4	임	20,522. 5	20,522. 5					별필
				산53	임	3,372	518	임	3,787.6	415.6					
49	정선	화암	건천	333	전	1,679	333	전	1,203.3		475.7	강릉시 내곡동 35-3	함*선		
				336	전	730	336	전	858.1	128.1					
				370	임	2,331	370	임	2,652.9	321.9					
50	정선	화암	건천	311	전	2,952	311	전	2,527.2		424.8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오산리 302-7	함*철		
							311-2	전	267.0	267.0					
				336-1	전	6,516	336-1	전	5,586.1		929.9				

				산14	임	14,083	319-1	임	14,083. 0						
51	정선	화암	건천	273	전	1,061	273	전	708.8		352.2	정선군 동면 274	건천리	함*학	별필
							273-1	전	351.3	351.3					
				274	대	565	274	대	575.0	10.0					
				275	전	1,798	275	전	825.4	972.6					
				281	전	648	281	전	1,457.9	809.9					
				296	전	5,940	296	전	6,988.9	1,048.9					
52	정선	화암	건천	241	전	1,534	241	전	1,534.1	0.1	정선군 동면 274	건천리	함*홍		
				351	임	1,580	351	임	1,580.0						
				363	임	4,016	363	임	4,016.1	0.1					
53	정선	화암	건천	321-2	임	1,712	321-2	임	3,140.0	1,428.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2-13-302	함*식			
				355	임	14,040	355	임	10,722. 0	3,318.0					
				356	임		356	임	11,399.	2,969.4					

						8,430			4				
				산52	임	1,488	519	임	1,043.9		444.1		
				산71	임	4,066	356-4	임	5,261.2	1,195.2			
54	정선	화암	건천	351-1	임	4,450	351-1	임	4,450.0				함*기 미등기
55	정선	화암	건천	267	전	4,694	267	전	4,694.4	0.4		정선군 동면 건천리 290	함*선
				268	전	2,509	268	전	3,117.6	608.6		정선군 동면 건천리 290-1	
				348	임	2,079	348	임	2,079.1	0.1		정선군 동면 건천리 290	
				348-1	임	7,345	348-1	임	5,230.0		2,115.0		
56	정선	화암	건천	310	전	764	310	전	594.8		169.2	정선군 동면 북동리 173	허*일
				313	전	377	313	전	546.6	169.6			
57	정선	화암	건천	326	임	1,623	326	임	2,691.0	1,068.0		서울송파구가락동176 삼환가락아파트2동202 호	홍*표
				326-1	임	8,334	326-1	임	7,305.0		1,029.0		
58	정선	화암	건천	348-2	임	9,398	348-2	임	9,398.0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 141-36 신우빌라-201	황*근
59	정선	화암	건천	232-1	도		232-1	도	812.4	77.4			건설부

					735									
						307-1	도	229.2	229.2					별필
						233-1	도	183.6	89.6					
				233-1	도	94		233-2	도	42.3	42.3			별필
						233-3	도	184.9	184.9					별필
				248-1	도	509		248-1	도	644.5	135.5			
				264-1	도	291		264-1	도	4,695.8	4,404.8			
				265-1	도	80		265-1	도	170.5	90.5			
								268-1	도	2,422.2	316.2			
								308-1	도	964.4	964.4			별필
				268-1	도	2,106		316-1	도	1,819.3	1,819.3			별필
								327-1	도	1,024.9	1,024.9			별필
								334-1	도	286.9	286.9			별필

							347-1	도	1,774.4	1,774.4				별필
				278-1	도	80	278-1	도	139.0	59.0				
				281-1	도	25	281-1	도	182.4	157.4				
				284-1	도	390	284-1	도	1,707.7	1,317.7				
	정선	화암	건천	290-1	도	231	290-1	도	83.0		148.0			
				302-1	도	28	302-1	도	94.2	66.2				
				363-1	도	3,648	363-1	도	1,407.7		2,240.3			
							372-6	도	1,812.5	1,812.5				별필
							373-1	도	1,111.1	1,111.1				별필
							356-1	도	3,252.3	3,252.3				별필
							356-2	도	329.4	329.4				별필
							356-3	도	380.6	380.6				별필
				371-1	도	561	371-1	도	889.4	328.4				

						371-2	도	255.4	255.4			별필
						371-3	도	11.6	11.6			별필
				516-6	구	50,003		33,466.6		16,536.4		
						516-7	구	26.3	26.3			별필
						516-8	구	2,018.0	2,018.0			별필
						516-9	구	334.4	334.4			별필
						516-10	구	240.6	240.6			별필
						516-11	구	512.1	512.1			별필
						516-12	구	35.1	35.1			별필
				산77-1	도	3,274		520-2	도	3,042.4	231.6	
60	정선	화암	건천	243	전	185	243	전	202.2	17.2		재정경제원
				253	전	565	253	전	565.4	0.4		기획재정부
				330-1	임		330-1	임	2,190.0		58.0	

				2,248									
61	정선	화암	건천	산2	임	1,189,190	521	임	1,037,994.8		151,195.2	산림청	
				산13	임	3,967	298-1	임	3,967.0				
				산77	임	571,240	520	임	723,782.9	152,542.9			
							520-1	임	8,288.9	8,288.9			
62	정선	화암	건천	369	임	1,514	369	임	1,196.5		317.5	정선군	
				산3	임	28,760	240-5	임	29,077.0	317.0			
63	정선	화암	건천	산51-1	도	1,582	517-1	도	1,542.6		39.4	국	
64	정선	화암	건천	325-1	임	4,598	325-1	임	4,598.0				미등기

[붙임 2]

조 정 금 조 서

지 구 명:건천지구

토지소재지: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340번지 일원

번호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지분	㎡당 가격 (원)	조정내역				소유자		지급·정수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증		감		주소	성명	일자	확인	
									면적(㎡)	금액(원)	면적(㎡)	금액(원)					
1	266	전	116	266	전	458.1		12,750	342.1	4,361,775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3-3	김*정			
	269	전	10,807	269	전	9,516.4		10,300		1,290.6	13,293,180						
	270	대	288	270	대	287.9		21,075		0.1	2,108						
계											8,933,500		김*정				
2	260	전	14,377	260	전	13,394.1		9,725			982.9	9,558,703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8-18	서*용			
				260-1	전	398.6		9,725	398.6	3,876,385							
				260-2	전	96.6		9,725	96.6	939,435							
				260-3	전	259.2		9,725	259.2	2,520,720							
				260-4	전	57.2		9,725	57.2	556,270							
	343	전	13,574	343	전	13,716.6		3,290	142.6	469,154							
	344-1	임	905	344-1	임	1,330.0		2,800	425	1,190,000							
	339	임	13,660	339	임	12,362.1	1/2					3,634,120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2,800			1,297.9						
계												1,823,700		서*용			
3	산24	임	2,876	338-1	임	1,814.2		2,408			1,061.8	2,556,814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5길 12	안*모			
계												2,556,800		안*모			
4	283	전	1,444	283	전	3,093.7		10,300	1649.7	16,991,910			경기도 구리시 과천동 377-1	안*모			
	286	전	3,174	286	전	1,791.4		10,300			1,382.6	14,240,780					
	289	전	1,967	289	전	1,690.6		12,750			276.4	3,524,100					
	290	대	218	290	대	218.0		21,500									
계											772,900		안*모				
5	298	전	11,580	298	전	11,442.3		12,750			137.7	1,755,675	강원 원주시 남원로 494,704동1407 호 (단구동, 청솔7차 아파트)	양*자			
계												1,755,600		양*자			
6	271	전	251	271	전	362.9		11,725	111.9	1,312,16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로 437-32	전*탁			
	272	대	532	272	대	532.1		23,750	0.1	2,375							
	276	전	1,868	276	전	1,460.0		11,725			408.0	4,783,800					
	277	전	400	277	전	400.4		11,725	0.4	4,690							
계											3,464,500		전*탁				
7	311	전	2,952	311	전	2,527.2					424.8	4,269,240	경기 오산시 운암로	함*철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10,050												
				311-2	전	267.0		10,050	267.0	2,683,350									
	336-1	전	6,516	336-1	전	5,586.1		9,500			929.9	8,834,050							63,105동1202호 (오산동,현대아파트)
	산14	임		319-1	임	14,083.0		2,359											
			14,083																
계												10,419,900							함*철
	245	전	248	245	전	2,025.7		11,725	1,777.7	20,843,533									
	246	전	5,854	246	전	2,938.4		11,725			2,915.6	34,185,410							
	249	전	7,266	249	전	1,850.4		11,725			5,415.6	63,497,910							
				249-1	전	990.1		11,725	990.1	11,608,923									
	250	대	926	250	대	926.0		23,975											
	254	임	1,990	254	임	1,990.2		2,961	0.2	592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3-3
8	255-1	대	496	255-1	대	495.9		20,900			0.1	2,090							김*성
	255-2	전	11,084	255-2	전	11,190.5		9,725	106.5	1,035,713									
	257	임	2,423	257	임	2,423.0		2,996											
	257-1	전	36,134	257-1	전	44,703.5		9,725	8,569.5	83,338,388									
	258-2	전	932	258-2	전	275.8		9,725			656.2	6,381,545							
	349	임	1,431	349	임	1,998.5		3,724	567.5	2,113,370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361	임	44,440	361	임	21,458.6		3,220		22,981.4	74,000,108				
				361-2	임	3,327.6		3,220	3,327.6	10,714,872					
				361-3	임	11,100.8		3,220	11,100.8	35,744,576					
				361-4	임	7,456.2		3,220	7,456.2	24,008,964					
	산42	임	14,063	256-1	임	15,733.4		2,359	1,670.4	3,940,474					
				255-3	임	1,057.6		2,359	1,057.6	2,494,878					
	산42-2	임	19,350	349-1	임	26,628.1		1,631	7,278.1	11,870,581					
계										29,647,700				김*성	
9	261	전	1,970	261	전	1,760.1		9,725		209.9	2,041,278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1길 47	김*범		
	265	대	833	265	대	650.4		23,975		182.6	4,377,835				
	311-1	임	10,691	311-1	임	10,346.1		2,905		344.9	1,001,935				
	312	전	1,785	312	전	1,990.1		9,725	205.1	1,948,450					
	332	전	10,658	332	전	11,280.2		9,725	622.2	5,910,900					
	337	전	1,177	337	전	1,177.4		9,725	0.4	3,800					
계									442,100				김*범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10	364-1	전	22,306	364-1	전	23,412.5		9,500	1,106.5	10,511,750			강원 정선군 사북읍 배래치길 40-7	라*복			
	산73	임	1,440	364-3	임	1,440.0		2,387									
	산73-2	임	3,432	364-4	임	3,432.0		2,338									
계										10,511,700				라*복			
11	321	전	1,656	321	전	1,656.3		10,050	0.3	3,015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번길 9. 2동301호 (부평동,엘지맨션)	송*숙			
	321-1	전	6,203	321-1	전	6,273.4		9,500	70.4	668,800							
	321-3	임	360	321-3	임	360.4		2,996	0.4	1,198							
	321-4	임	1,683	321-4	임	1,683.4		4,158	0.4	1,663							
	321-5	임	392	321-5	임	392.6		3,500	0.6	2,100							
계										676,700				송*숙			
12	312-1	전	5,752	312-1	전	5,804.4		9,500	52.4	497,8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30,903동206호(고잔동주공아파트)	윤*복			
계										497,800				윤*복			
13	247	전	1,395	247	전	1,784.2		11,725	389.2	4,563,370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57	이*영			
	301	대	785	301	대	861.6		23,750	76.6	1,819,250							
	301-1	전	4,012	301-1	전	1,693.9		9,725			2,318.1	22,543,523					
				301-2	전	1,749.5			1,749.5								

							9,725		17,013,888									
	303	전	463	303	전	739.1		11,725	276.1	3,237,273								
	307	전	298	307	전	298.0		9,500										
	308	임	11,045	308	임	10,752.5		3,633			292.5	1,062,653						
	318	전	13,544	318	전	13,941.5		9,500	397.5	3,776,250								
	335	전	6,003	335	전	6,183.2		9,500	180.2	1,711,900								
	339-1	임	24,344	339-1	임	22,461.4		2,800			1,882.6	5,271,280						
				339-2	임	3,452.4		2,800	3,452.4	9,666,720								
	341	임	7,279	341	임	4,740.0		2,506			2,539.0	6,362,734						
				341-1	임	1,730.9		2,506	1,730.9	4,337,635								
	342	임	1,021	342	임	902.3		2,800			118.7	332,360						
	339	임	13,660	339	임	12,362.1	1/2	2,800			1,297.9	3,634,120						
계										8,736,600							이*영	
14	258	전	3,140	258	전	2,860.9		9,725			279.1	2,714,248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23-20	이*봉				
	292	대	367	292	대	367.4		21,500	0.4	8,600								
	293	전	1,183	293	전	1,194.5		12,025	11.5	138,288								
	295	전	4,251	295	전	4,251.1		9,725	0.1	973								
	295-1	임		295-1	임	14,346.3			326.3	977,595								

			14,020					2,996										
	296-1	임	4,274	296-1	임	2,542.8		2,996			1,731.2	5,186,675						
				296-3	임	1,731.0		2,996	1,731.0	5,186,076								
	352	전	6,324	352	전	8,938.0		10,350	2,614.0	27,054,900								
	352-1	전	4,235	352-1	전	1,624.9		9,225			2,610.1	24,078,173						
계										1,387,300								이*봉
15	278	전	6,010	278	전	6,010.0		11,725										
	280	전	1,914	280	전	1,645.5		9,725			268.5	2,611,163						
	282	임	1,025	282	임	1,189.2		3,535	164.2	580,447								
	287	전	6,816	287	전	7,172.5		10,300	356.5	3,671,950								
	288	전	407	288	전	407.1		10,300	0.1	1,030								
	291	전	284	291	전	318.4		12,750	34.4	438,600								
	330	임	2,063	330	임	907.3		2,800			1,155.7	3,235,960						
					330-2	임	1,155.8		2,800	1,155.8	3,236,240							
	331-1	전	1,838	331-1	전	1,838.0		9,500										
계										2,081,100								이*봉
16	산50	임	5,950	363-2	임	5,950.0		2,779										
	산51	임		365-3	임	27,291.1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113동606호
(정왕동, 주공아파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현3길
25,103동102호
(고잔동, 현대연립)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60,793					2,779			33,501.9	93,101,780					
				517	임	33,501.4		2,779	33,501.4	93,100,391)				
				365-4	임	20,522.5		2,779	20,522.5	57,032,028							
	산53	임	3,372	518	임	3,787.6		11,725	415.6	4,872,910							
계										61,903,500							함*석
계										4,871,500							함*석
17	333	전	1,679	333	전	1,203.3		9,500			475.7	4,519,150	강원 춘천시 남춘천새길 41번길22-1 (효자동)				함*선
	336	전	730	336	전	858.1		9,500	128.1	1,216,950							
	370	임	2,331	370	임	2,652.9		12,125	321.9	3,903,038							
계										600,800							함*선
18	273	전	1,061	273	전	708.8		11,725			352.2	4,129,545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일길 145				함*학
				273-1	전	351.3		11,725	351.3	4,118,993							
	274	대	565	274	대	575.0		21,500	10.0	215,000							
	275	전	1,798	275	전	825.4		10,300			972.6	10,017,780					
	281	전	648	281	전	1,457.9		9,725	809.9	7,876,278							
	296	전	5,940	296	전	6,988.9		9,725	1,048.9	10,200,53							

제317호

정 선 군 보

2014. 3. 5.(수)

										3							
계										8,263,400				함*학			

정선군공고 제2014-112호

2014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14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 1. 주 관 : 정선군
- 2. 추천기간 : 2014. 3. 3. ~ 3. 28.(26일간)
- 3. 시상부문 및 추천기준

부문	추천 기준	추천 자
문화 체육	문화, 예술, 교육, 군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원장, 학술 및 문화예술 단체장, 각급학교장, 체육단체장, 읍면장, 문화관광과장
지역 개발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각 사회단체장, 읍면장
농림 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로 지역주민의 농림업소득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각 기업체대표, 농협축협·산림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읍면장
사회 봉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 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각 사회단체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
환경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환경관련단체장, 생태환경과장, 읍면장

- 공통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기준일 현재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4. 추천 제외대상

- 당해년도 향토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 향토민상을 동일 부문으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5. 추천 구비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읍면사무소 비치)
-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 이력서 1통(단,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함)
-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기타 공적 증빙자료

6. 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7. 시 상

-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 시상

8.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42), 또는 읍·면 총무부서

정선군 공고 제2014 - 131호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규정에 의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2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공 고 사 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규정에 의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공 고 기 간 : 공고일부터 7일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별첨

라. 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내(별도서식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생태환경과(☎033-560-234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14. 02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평가기준(안)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기본원칙

-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 나.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다. 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자리까지 하되, 소수 3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0)에 의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 마. 우리군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바.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5 제1호 「항목별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의 의견에 따른다.
- 사. PQ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수로 투입해야 한다.
(± 10 % 내에서 조정 가능)

3.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지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0 % 내에서 조정 가능)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1)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2)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 위 제1항(용역사업 집행계획) 가호의 용역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발주 금액에 따른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
 -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제출
10.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항,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안전행정부 예규\(제33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1호에 의하여 공동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한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4. 항목별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1) 사업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8 (4)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유사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2 (5)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유사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평가 																							
	(3) 분야별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8 (2)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유사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평가 																							
	(4) 참여기술자의 교육 훈련, 전차용역 수행실 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수행실적	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5) 이적에 따른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용역수행실적	15 (7)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수행건수 및 금액에 따라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 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p>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5 (2)	<p>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p>※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671 678 1401 846">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10년미만</td> <td>10년이상20년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투자실적	(10)	<p>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667 1350 1401 1496"> <tr> <td>구분</td> <td>3% 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구분	3% 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3% 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3)활용실적	(3)	<p>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p> <p>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기간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방 법																							
			<p><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p> <table border="1" data-bbox="671 439 1402 68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미만 40이상</td> <td>4미만 30이상</td> <td>3미만 20이상</td> <td>2미만 10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미만 180이상</td> <td>18미만 160이상</td> <td>16미만 140이상</td> <td>14미만 120이상</td> </tr> </tbody>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0이상	4미만 30이상	3미만 20이상	2미만 10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0이상	18미만 160이상	16미만 140이상	14미만 120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0이상	4미만 30이상	3미만 20이상	2미만 10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0이상	18미만 160이상	16미만 140이상	14미만 120이상																					
<p>마. 업무중복도</p>	<p>(1)사업책임 기술자 (2)분야별 책임기술자</p>	<p>10 (4)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유사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p>*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으로 한정</p>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

1. 참여 기술자 (50점)

1.1 사업책임기술자(18점)

(1) 자 격 (4점)(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수질관리 기술자에 한함.**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
배 점	4.0	3.0	1.0

(2) 경 력 (6점) (절대평가)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배 점	6.0	5.0	4.0	3.0	2.0

(3) 실 적(8점)(절대평가)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용역(별첨1)에 대한 실적 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건수기준 (8점)

실 적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배 점	8.0	7.2	6.4	5.6	4.8

1.2 분야별 책임기술자(22점)

(1) 자 격 (5점)(절대평가)

구 분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이하
점 수	5.0	3.0	1.0

- 분야별책임 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전문분야 기술자에 한함
- 분야별책임 기술자의 배점:(\sum 각 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2) 경 력 (8점)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 13년이상	13년미만 ~ 11년이상	11년미만 ~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분야별책임 기술자의 배점:(\sum 각 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자수)

(3) 실 적(9점)(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 건수기준 (9점)

실 적	7건이상	7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 분야별책임 기술자의 배점:(\sum 각 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자수)

1.3 분야별 참여기술자(8점)

(1) 자 격 (2점)

구 분	전문분야 고급기술자이상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초급이하
점 수	2.0	1.2	0.5

- 분야별참여 기술자 각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참여 기술자의 배점:(\sum 각 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자수)

(2) 경 력 (3점)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 9년이상	9년미만 ~ 8년이상	8년미만 ~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분야별참여 기술자의 배점: $(\sum \text{각 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div \text{분야별참여기술자수})$

(3) 실 적(3점)(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자의 실적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실 적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분야별참여 기술자의 배점: $(\sum \text{각 분야별참여기술자점수} \div \text{분야별참여기술자수})$

1.4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1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text{교육이수인원} / \text{평가대상인원}) \times 1\text{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text{교육이수인원} / \text{평가대상인원}) \times 0.5\text{점}$

(2)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전차용역을 수행한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용역의 범위 : 전 단계 용역에 한한다.
- 참여기술자(1.0점)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당해용역에 사업책임 기술자 참여시(0.5점), 전차용역의 책임기술자인 기술자가 당해용역에 해당분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0.5점) 점수부여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 : 1.0 5년 미만 : 0.8 5년이상 ~ 10년미만 : 0.6
 - 10년이상 : 0.4
 - ※ 점수 : $\text{해당배점} \times \text{참여비율} \times \text{기간경과 가중치계수}$

※ 전차 및 금차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참여비율 적용

예시) 전차 4개분야 중 금차 2개분야 참여, 3년 미만인경우

$$0.5 \times 2/4 \times 1.0 = 0.25\text{점}$$

1.5 이적에 따른 감점

- (1)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2)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서 확인 (공고일기준)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 0.6 (감점계수)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12개월 이상 :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절대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용역 (별첨1) 준공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건수는 1건으로 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건수 1건 × 50% = 1건, 금액 10억 × 50% = 5억)
- 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14점)

① 건수 기준(7.0)

실 적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배 점	7.0	6.3	5.6	4.9	4.2

② 금액 기준(7.0)

금 액	30억이상	30억미만 ~ 20억이상	20억미만 ~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배 점	7.0	6.3	5.6	4.9	4.2

2.2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전차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평가
- 전차용역의 범위 : 前 단계 용역에 한한다.
- 업체(1.0점)
 - 전차용역 참여업체가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전차참여비율 및 금차참여 비율 및 경과기간에 따라 점수부여.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미만 : 1.0
 - 5년미만 : 0.8
 - 5년이상 ~ 10년미만 : 0.6
 - 10년이상 : 0.4
 - ※ 점수 : 해당배점 x 전차참여비율 x 금차참여비율 x 기간경과가중치계수
 예시) 전차비율 60%, 금차비율 70% , 3년미만인경우
 $1.0 \times 0.6 \times 0.7 \times 1.0 = 0.42$ 점

3. 신용도 (10점)

3.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점) (절대평가)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 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 용역업자 (3.5점)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자 (3.5점)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 (-1 ~ -5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이상 부터 감점한다.

구 분	누계 평균 부실벌점					
	1.0점 ~ 2.0점미만	2.0점 ~ 5점미만	5점 ~ 10점미만	10점 ~15점미만	15점 ~20점미만	20점이상
점 수	-0.2	- 0.5	- 1.0	- 2.0	- 3.0	- 5.0

3.2 신용평가등급(3점)(절대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절대평가)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
- (2)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써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 (3) 공동개발일 경우 해당점수를 개발자수로 나누어 산정
- (4)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만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경과기간에 따른 배분

구 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4.2 투자실적 (10점) (절대평가)

○ 투자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 (1) 최근 3년간 투자실적 금액 및 건설부문 매출액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금액만 인정하고, 건설부문 매출액의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2)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비율

○ 투자실적 비율(%) = $\frac{\text{투자실적 금액}}{\text{건설부문매출액}} \times 100$

구 분	3.0% 이상	3.0% 미만 ~ 2.5이상	2.5% 미만 ~ 2.0이상	2.0% 미만 ~1.5이상	1.5% 미만 ~ 1.0이상
배 점	10.0	9.0	8.0	7.0	6.0

4.3 활용실적 (3점) (절대평가)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5. 업무중복도 (10점)(절대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유사용역에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유사용역실적(별첨1) 중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중인 설계 용역에 대하여 업무중복도를 평가한다. 단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용역중지중 용역 및 사후환경조사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의 당해업체의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각 기관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술자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처리한다.(0점)
- **우리군**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자료에 의한다.

5.1 사업책임 기술자 (4점)

구 분	과업기간의 100%미만	과업기간의 100%이상~150% 미만	과업기간의 150%이상~200% 미만	과업기간의 200%이상~250% 미만	과업기간의 250%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5.2 분야별책임 기술자 (6점)

구 분	과업기간의 100%미만	과업기간의 100%이상~150% 미만	과업기간의 150%이상~200% 미만	과업기간의 200%이상~250% 미만	과업기간의 250%이상
배 점	6.0	5.4	4.8	4.2	3.6

○ 분야별책임 기술자의 배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자수)

별첨 1

분야별 기술자 자격(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참여분야)		전문분야별 기술자자격 및 참가업종 분류	기술자 실적인정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비고
수질 관리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책임자 -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 특급이상 해당분야기술자 •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3. 공공측량업 4. 방재안전대책 수립대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비점오염저감시설(흙탕물저감 포함, CSOs 및 저류시설 제외)관련용역(조사, 연구 및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역명

-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본 안내서는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 1)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일원
- 2) 사업량 : 비점오염저감시설(다단침사지 A=50,000㎡)
- 3)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4) 용역비 : 금380,6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 : 무선철(상철)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1)

- 1)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을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책임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자 총괄표(양식2)

- 1)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 작성
-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전문분야경력” 을 기재한다.
-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전차용역(양식3)

-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 기술자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 유사용역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4) 교육훈련(양식4)

- 양식1의 참여기술자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한다.

5) 전차용역 (양식5)

- 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6, 7)

-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 2) 회사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이상의 유사용역(별첨1)의 참여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 5) 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신용도(양식8, 9, 10)

- 1)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자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7)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1, 12, 13)

-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 4)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시 우리군에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복도(양식14)

- 1) 공고일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해당분야 유사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사본 및 전체참여기술자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 3) “잔여기간” 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 4)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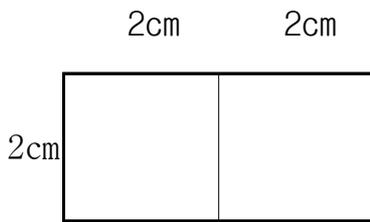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참가신청서
2. 목 차
3. 참여기술자 현황
 - 가. 참여 기술자 조직표(양식1)
 - 나. 참여 기술자의 총괄표(양식2)
 - 다. 참여 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3)
 - 라. 참여 기술자의 교육훈련(양식4)
 - 마. 참여 기술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양식5)
4.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양식6, 7)
5.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양식8)
 - 나. 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양식9)
 - 다. 신용평가등급(양식10)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 개발실적(양식11)
 - 나. 투자실적(양식12)
 - 다. 활용실적(양식13)
7. 업무 중복도
 -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14)
8. 자기평가표(양식15)

[표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4.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용역명 :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불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14.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정선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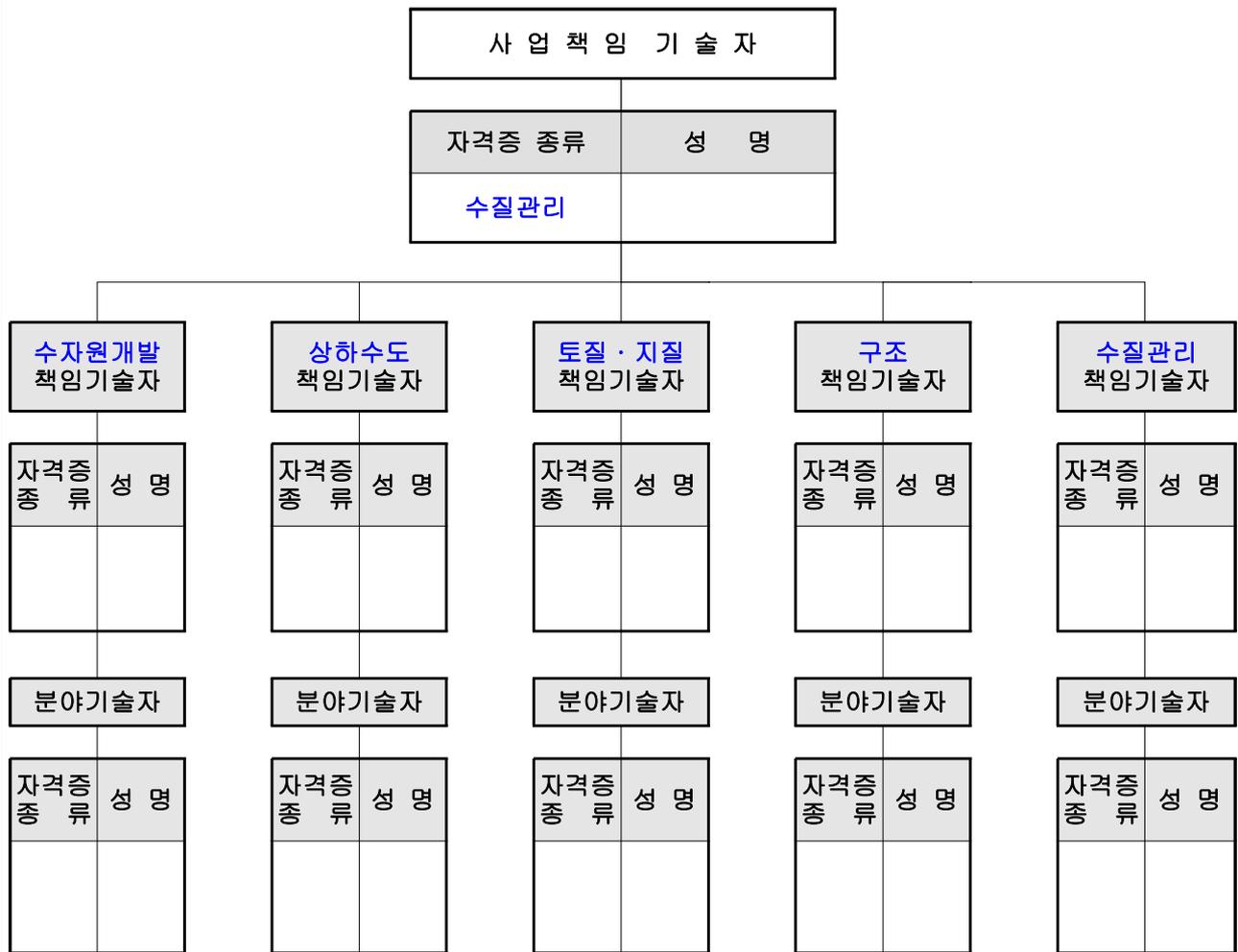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 . 회 사 명		2 . 대 표 자	
3 . 신 고 분 야			
4 . 주 소			
5 . 전 화 번 호			
6 . 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자 조직표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 10 %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참여지분률에 의한 배치인원 산정시 소숫점은 사사오입 한다.)
 4. 분야별 책임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한다.

예시)

구 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산출방법	$11명 \times 51\% = 5.61 \approx 6.0명$	$11명 \times 49\% = 5.31 \approx 5.0명$

(양식 2)

참여기술자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기 술 자 격 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기 술 자 격 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기 술 자 격 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 주) 1.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자등급 각 기술자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건설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사업책임 기술자에 한함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참여기술자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일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일수)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 위	
			총금액 기재	00.00.00 ~00.00.00 (000일)	00.00.00 ~00.00.00 (000일)					
합 계			백만원	000일 00.0년	000일 00.0년	건				

- 주) 1.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자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가.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교 육 기 간 (년월 ~ 년월)	교 육 기 관	비 고

- 주) 1. 참여건설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작성한다.

(양식 5)

가. 전차 용역과의 관련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 연계내용					
○ 참여기술자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소속	본용역 참여분야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총 용 금 역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 주 처	비 고
	계	건						

-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다. 전차 용역과의 관련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 연계내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형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용역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전차용역 : 전 단계 용역에 한함

(양식 8)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기간(부정당업자 지정) 및 기술자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 용역업체

회사명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자

회사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9)

나. 부실벌점

1) 회사의 부실벌점

업 체 명	부 실 벌 점	비 고

2)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부 실 벌 점	비 고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 식 10)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교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구	분	명 칭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최 초 출원인수	산 정 점 수
기 술 개 발 실	신 기 술					
	계					
	특 허					
	계					
	실 용 신 안					
	계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나.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 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평 균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다. 활용실적

구 분	연도	명 칭	공사명	내용	활용건수	활용금액 (억원)	가중치	비 고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 주)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기술자 : (성명)

연번	용역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자 : (성명)

연번	용역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유사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 업체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합 계			
	사업책임 기술자 (성 명)	계		
		자 격		
		경 력	00.0년 (0,000일)	
		실 적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소 계		
		자 격		
		경 력	00.0년 (0,000일)	
		실 적		
		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소 계		
		자 격		
		경 력	00.0년 (0,000일)	
		실 적		
		계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전차용역		
	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계	
유사 용역 실적			건수	
			금액	
전차용역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소 계		
		입찰 참가 제한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부실 벌점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소계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첨부 1.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인)	
용역명			
발주처			

첨부 2.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 -0000000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정선군 공고 제2014-147호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2. 폐지이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는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생태환경과(우편번호 233-804)
- 전화 033-560-2336, FAX 033-560-2589

붙임 :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

강원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2003. 12. 26 조례 제1935호)

개정(2005. 05. 12 조례 제1973호)

법제명 변경 및 개정(2008. 05. 19 조례 제21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제2장 과태료의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9>

제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청취결과 그 의견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9>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신청 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 2005.05.12>

②같은 날 같은 사업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05.12>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9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사업장에서 행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0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신고접수된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우편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우편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사실 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 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감액된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신고자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5.12>

②신고포상금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결과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인정되어 위반자에게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이 확인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일을 기준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해당 월 한도액은 전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05.12>
4. 신고된 위반내용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군수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성명·주소 등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예산편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금 소요액을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탄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m ²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정선군 공고 제2014 - 149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2. 폐지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생태환경과(우편번호 233-804)
- 전화 033-560-2336, FAX 033-560-2589

붙임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1994. 07. 22 조례 제1590호)

개정(2000. 01. 18 조례 제1809호)

개정(2004. 11. 17 조례 제19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부과 처분횟수 및 양도·상속시 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의견청취)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제5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탄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m ²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정선군 공고 제2014-150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정 선 군 수

- 1. 규 칙 명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2. 폐지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생태환경과(우편번호 233-804)
- 전화 033-560-2336, FAX 033-560-2589

붙임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1994. 07. 17 규칙 제0823호)

개정(1995. 06. 10 규칙 제0843호)

개정(1999. 12. 04 규칙 제0965호)

개정(2004. 11. 17 규칙 제10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3 호서식]을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7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부에 관한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탄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증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10	30	50	

미만인 경우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 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 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정선군공고 제2014- 1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고한19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지구명	사 업 개 요							비고	
	지정일자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착공	준공		
고한19리	2012.04.03	고한19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한리 274-180번지	고한리 62-130번지	- 보상 1식 - 건물철거 19동 - 하천정비 1식	'14.01	'15.12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여건 확보	손실상공추진

※ 열람서류

1. 토지,지장물조서(안전건설과 비치)
2. 실시설계도서(안전건설과 비치)
3. 위치도(안전건설과 비치)

정선군보건소 공고 제2014 - 4호

정선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정선군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정 선 군 수

- 1. 공고기간 : 2014. 2. 20 ~ 2014. 2. 26.
-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	비고
간호사	1명	2014년 3월~12월	자살예방사업	재계약가능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소지자
- 응시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내부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4. 근무조건

- 보 수 :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퇴 직 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 복무규정 : 근로기준법 및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따름
- 근무장소 : 정선군보건소 1명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 20(목) ~ 2. 26(수)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 26일 18:00 도착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정선군보건소 건강관리팀, ☎ 033)560-2736
200-80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33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 자기소개서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14. 2. 27일 개별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장소 및 일시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2. 28일 개별통지

8. 응시자 주의사항

- 이력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보건소 건강관리팀 ☎ 033)560-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